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06호

도시관리계획(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7호(2012.2.2.)로 결정(변경)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3월 19일
서울특별시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업무기능(공유오피스)도입에 따른 적정규모 개발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(한남동 736-9번지 외 2필지)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II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사항

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	용산구 이태원동, 한남동일대	220,459 (1,270.8)	-	220,459 (1,270.8)	서고시 제1995-54호 ('95.3.2.)	(재정비 결정) 서고시 제2012-27호 ('12.2.2.)

※ ()는 사업대상지 면적임

I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: 변경없음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: 변경없음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220,459	-	220,459	100.0	
주거지역	소계	193,023	-	193,023	87.6	
	제1종전용주거지역	879	-	879	0.4	
	제1종일반주거지역	22,704	-	22,704	10.3	
	제2종일반주거지역	61,231	-	61,231	27.8	
	준주거지역	108,209 (1,270.8)	-	108,209 (1,270.8)	49.1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27,436	-	27,436	12.4	

※ ()은 사업대상지 면적임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: 변경없음

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최소·최대개발규모: 변경없음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번호	가구번호	가구면적(㎡)	획지		계획내용	비 고
				획지	면적(㎡)		
기정	획지위치와 동일	D-c	8,389	한남동 736-9, 736-36	748.8	단위획지개발	
				한남동 736-10	522	단위획지개발	
변경	획지위치와 동일	D-c	8,389	한남동 736-9, 36, 10	1,270.8	단위획지개발	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결정(변경)내용	변경사유
D-c	2개의 단위획지개발 → 1개의 단위획지개발	○업무기능 도입에 따른 적정개발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및 최대개발 규모 완화

2.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: 변경없음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대지 내 공지계획

1) 획지 한남동 736-9, 36, 10 (면적:1,270.8㎡)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신설	공개공지	공개공지 위치 지정 (결정도 참고)
	공공보행통로	공공보행통로 위치 지정 최소 1.5m이상 확보 (결정도 참고) ○간선부와 이면부 보행 연속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엘리베이터 24시간 개방 운영 ○공공보행통로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사용안내 표지판 설치 운영
	대지 내 보행공간	이면도로(우사단로 17길)와 접한 대지경계로부터 1m내외로 보행공간 확보하고 포장패턴은 전면공지 조성 지침을 따름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결정(변경)내용	변경사유
공개공지	공개공지 위치 지정	○최대개발규모 완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변 지형단차 해소 방안으로 수직공공보행통로 계획 및 공개공지 위치 지정
공공보행통로	공공보행통로 위치 지정 최소 1.5m이상 확보	

구 분	결정(변경)내용	변경사유
대지 내 보행공간	이면도로(우사단로 17길)와 접한 대지경계로부터 1m내외로 보행공간 확보하고 포장패턴은 전면공지 조성 지침을 따름	○이면부 차량진출입구 설치시 가로보행 안전성 확보

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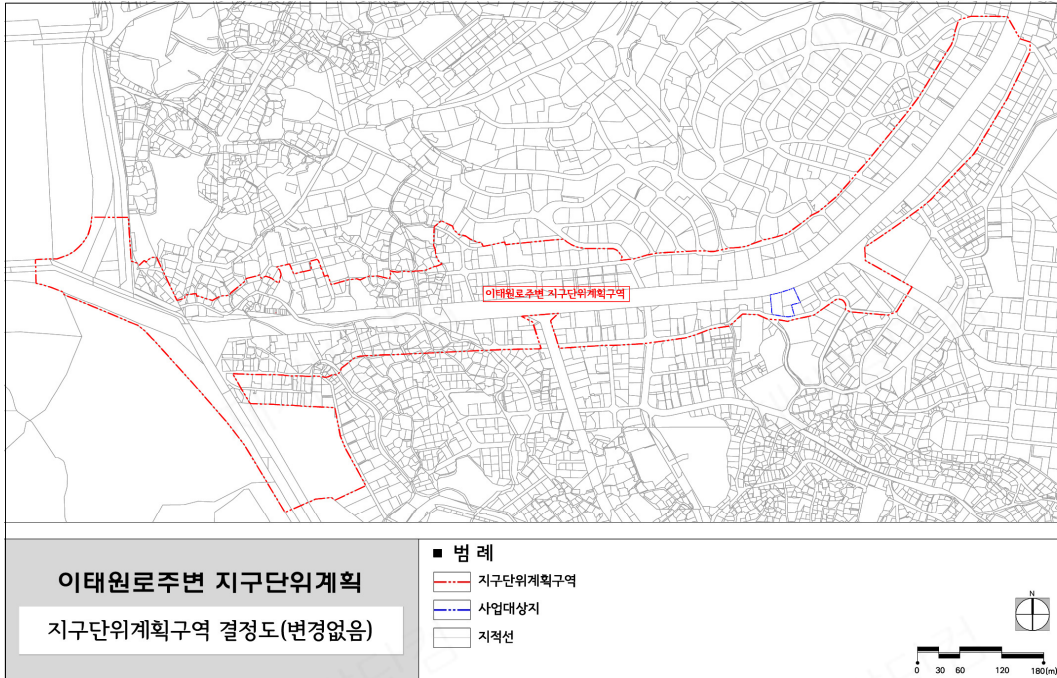
IV. 관계도면: 생략(세부 관계도면은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도면은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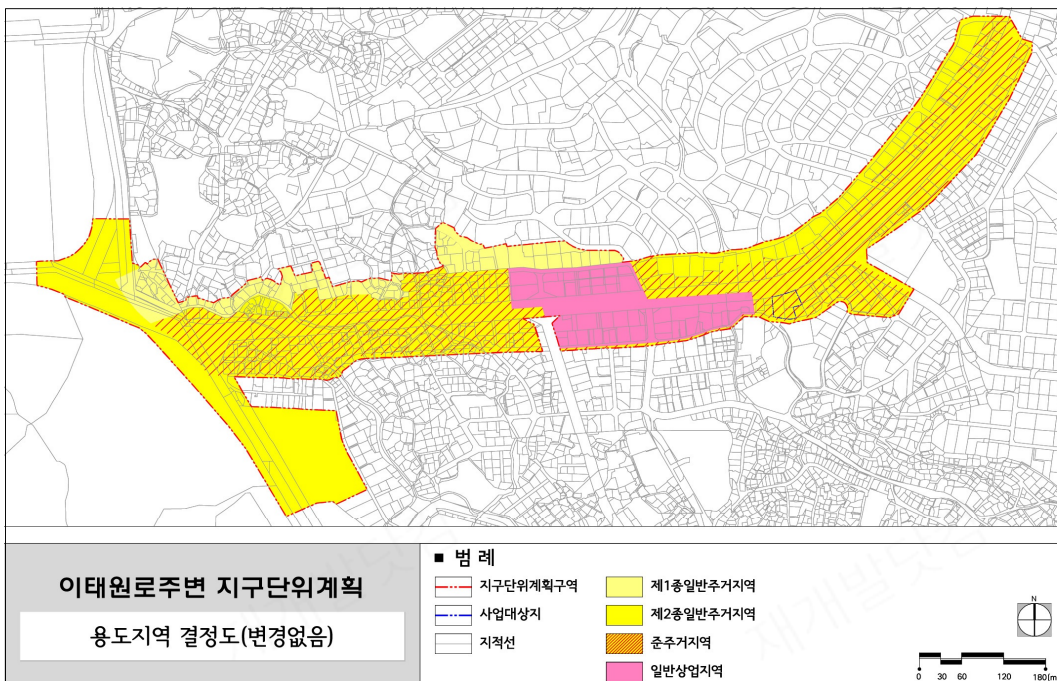
V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0)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1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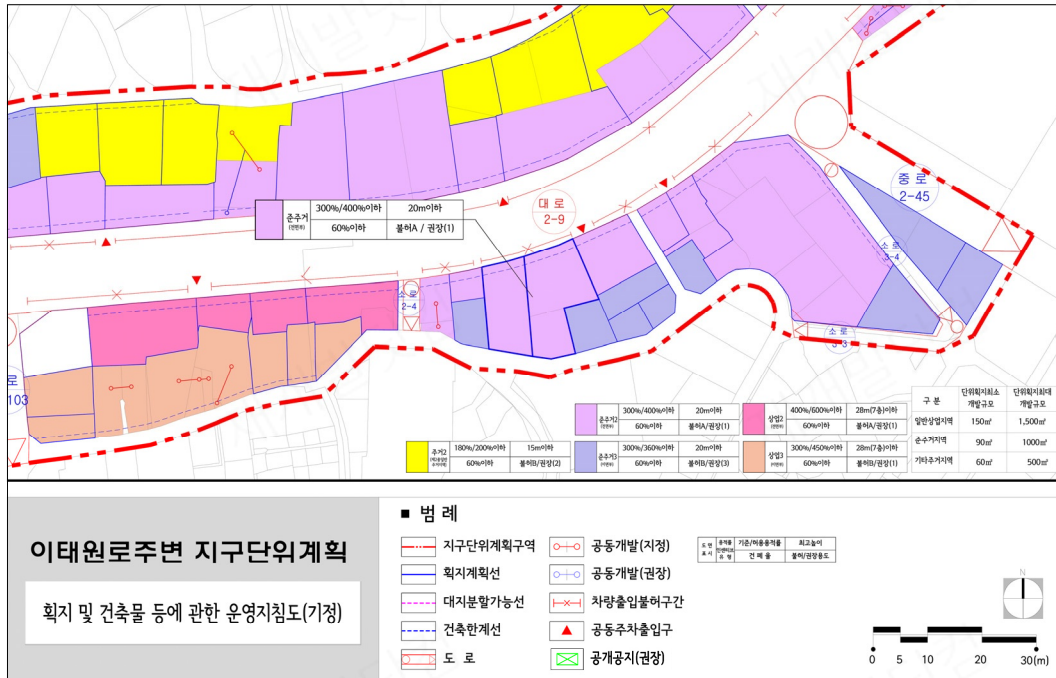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운영지침도(기정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운영지침도(변경)

